

서울특별시 중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가 주최·주관하거나 출연·보조·위탁하는 행사의 예산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중구민의 알권리 보장 및 예산 집행의 책임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라. 공개 대상·사항·의무·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9길 40(을지로6가 18-14) 의회사무과
- 전화 : 02)3396-8166 팩스 : 02)3396-9055
- E-mail : moonsun1004@junggu.seoul.kr

서울특별시 중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조 미 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5년 11월 5일

발 의 자 : 조 미 정 의원 외 3명

(송재천의원, 양은미의원, 윤판오의원)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가 주최·주관하거나 출연·보조·위탁하는 행사의 예산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중구민의 알권리 보장 및 예산 집행의 책임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라. 공개 대상·사항·의무·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관계 법령 : 붙임

서울특별시 중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가 주최·주관하거나 출연·보조·위탁하는 행사예산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중구민의 알권리 보장하고, 예산 집행의 책임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사”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주관하거나 구가 출연·보조·위탁하는 축제, 문화제, 예술제,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
2. “행사예산”이란 구가 직접 집행하거나 사업자 등에 출연 또는 보조, 교부한 위탁금 등의 예산을 말한다.
3. “홍보물”이란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포스터, 전단지, 광고지, 홍보책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사예산을 사전에 공개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행사예산 공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개대상) 행사예산 공개는 소요되는 예산이 총 3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6조(공개사항) 이 조례에 따른 행사예산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
2. 재원별 예산 현황(국비·시비·구비·자부담 금액 및 그 비율)

제7조(공개의무) 행사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행사 홍보물을 제작할 제6조의 사항을 홍보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구가 사업비를 출연 또는 교부한 경우에는 행사예산을 출연·교부받아 집행하는 자가 이를 대신한다.

제8조(공개방법) ① 행사예산의 표기는 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해야 한다.

② 행사예산의 표기 위치는 홍보물 전면 우측 하단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별이 쉬운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③ 예산 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 면적의 100분의 5 이상

2. 여러 방으로 작성된 홍보물 : 앞표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홍보물의 경우에는 행사예산 확인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지방자치법**[시행 2025. 10. 2.] [법률 제20870호, 2025. 4. 1., 일부개정]

제26조(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이하 “지방자치정보”라 한다)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의 지방자치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된 지방자치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공개법)**

[시행 2023. 11. 17.] [법률 제19408호, 2023. 5. 16., 타법개정]

제3조(정보공개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8. 6.]

제4조(적용 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3. 8. 6.]